

#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8,665,071	8,659,952
일반회계	264,105,268	7,923,158
특별회계	24,559,803	736,794
기타특별회계	24,559,803	736,794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762,035	82,86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5,576	14,5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69,510	251,085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795,884	23,8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6,034	21,781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2,619,200	78,576
기반시설특별회계	137,145	4,114
섬진강댐특별회계	8,664,419	259,933

제 2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8,324천원」과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